

의안번호	2220720
의 퇴 인	김영진 의원
회 답 일	2026. 9. 4.
추계번호	26A426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4조의2제1항 본문(포상금의 지급)	○ 탈세제보의 경우 40억원,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의 경우 30억원, 그 밖의 경우 20억원으로 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함	재량규정
2	안 제84조의2제1항 단서·제6호의2 신설(포상금의 지급)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 관련 자료를 제공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함 －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안 제84조의2제1항제6호의2 신설) －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84조의2제1항 본문(포상금의 지급)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84조의2제1항 단서·제6호의2 신설(포상금의 지급)	

2. 상세사유

- 개정안과 같이 탈세제보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 관련 자료를 제공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는 경우 국가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법은 국세청장이 조세 탈루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에게 탈세제보의 경우 40억원,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의 경우 30억원, 그 밖의 경우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

□ 다만, 현시점에 포상금 지급한도 폐지에 따라 추가로 지급될 포상금의 규모와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 관련 자료의 제공 건수 및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포상금 지급한도 폐지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포상금이 현행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나, 향후 그러한 사례의 발생 건수와 한도 초과 금액을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움
-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에 관한 자료 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개정안 시행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것으로서 제공 건수에 관한 실적자료가 없고,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지급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움
- 참고로 최근 5년간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392건(140억 4,000만원), 2025년 516건(208억 7,100만원) 등 2021년부터 2025년 5년간 총 2,025건(812억 5,500만원)을 나타내고 있음

[표 1] 최근 5년간 탈세제보포상금지급현황: 2021~2025년

(단위: 건,백만원)

구분	건수 (A)	지급액 (B)	건당 지급액 (C=B/A)
2021년	392	14,040	36
2022년	372	14,952	40
2023년	435	17,553	40
2024년	310	13,839	45
2025년	516	20,871	40
합 계	2,025	81,255	40

자료: 국세통계포털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최천규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천규	02-6788-4653	choi1009@assembly.go.kr